

■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3의2] <신설 2022. 8. 9.>

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(제30조의2제1항 관련)

(단위 : m²)

학생정원	400명 이하	400명 초과 1,000명 미만	1,000명 이상
면적	교사건축면적 이상	교사기준면적 이상	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

비고

1. “학생정원”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.
2. “건축면적”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.